

대법원 2024. 8. 29 선고 2024재다47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4. 8. 29 자 2024재다472 결정

대법원 2024. 1. 25 선고 2023다299802 판결

전문

원고(재심피고) A

피고(재심원고) C

판결선고 2024. 8. 29.
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4. 1. 25. 자 2023다299802 판결

주문

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피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

때에만 허용되는 것인데, 피고(재심원고)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엄상필, 주 심 대법관 이흥구, 대법관 오석준, 대법관 이숙연